

英祖의 大報壇 증수와 明 三皇의 享社

김 호

- | | |
|---------------------------|-----------------------------------|
| 머리말 | 22일 이전) |
| 1. 明 毅宗과 太祖의 추가배향 | 2) 본격적인 增修 공사(3월 22일~4월 3일 |
| 1) 明 毅宗의 大報壇 配享 | 3) 親祭 여행을 위한 막바지 공사(4월 3일~4월 12일) |
| 2) 大報壇 증설 공사의 추진 | 4) 의궤 제작 |
| 3) 明 太祖의 추가 配享 논의 | 1) 物種의 준비 및 공사 시작(3월 22일) |
| 2. 대보단 공사와 의궤 제작 | |
| 1) 物種의 준비 및 공사 시작(3월 22일) | |

머리말

임란에 이어 청나라 오랑캐의 침입을 받고 치욕의 패배를 당한 이후 조선 지식인들은 국가적 대의로 북벌과 尊周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북벌의 현실적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자 북벌보다는 존주대의를 주장하는 쪽으로 변화해 나갔다. 북수설치보다는 내수외양의 방안이 모색되면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숙종대 설치된 大報壇은 대표적인 상징물이었다.¹⁾

1704년 명나라가 멸망한지 60년이 지난해가 돌아오자 숙종은 ‘明亡一甲’을 상기하면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구원병을 도와 나라를 재건하게 도와준[再造之恩] 명의 神宗을 제사지내려는 계획을 천명하였다. 원래 대보단의 근원은

1) 17세기 중엽 이후 대보단 설치와 증수과정 및 당시의 정치 문화적 배경은 정옥자, 1985 『대보단 창설에 관한 연구』, 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삼영사)를 참고하였다.

송시열이 세운 충북 화양동 계곡의 환장암에 있다. 송시열은 임란 당시 조선을 구원한 명의 신종황제를 위해 제단을 마련하고 신종 및 의종 두 황제를 제사지내면서 대명 의리를 강조한 바 있었다. 이후 1689년 己巳換局으로 송시열이 사사되자 高弟 권상하 등에 의해 스승의 유지가 받들어지고 萬東廟가 설치되었으며, 이를 국가에서 수용하여 대보단을 축조하고 명나라 황제 신종을 제사지내기로 한 것이다.

당시 중원의 주인은 청나라였으므로 이미 사라진 명의 황제를 제사지내는 일을 조선이 행한다면 다시금 청의 침입이나 혹은 간섭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가 있는데다가 藩王이 天子를 제사지낸 古例가 없다는 이유들로 대보단 영건 사업은 난항을 겪었지만 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壇을 지어 제사지내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합의되어 1704년 겨울 완성될 수 있었다.²⁾

이듬해 봄 드디어 숙종은 대보단에 나아가 명나라 신종 황제를 제사하였다. 3월 9일 子時가 되자 임금 숙종은 宜春門으로부터 禁苑 북쪽을 따라 서쪽으로 가서 朝宗門을 지나 대보단이 있는 곳에 이르러 제사를 거행한 것이다. 예에 의거하여 三獻禮를 행하고, 飲福을 한 후 禮가 끝나자 지방을 받들어 불살랐다. 대보단의 親祭는 매우 상징적인 의례였다. 명나라가 망한 이후 천자의 제사를 조선의 국왕이 대신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화가 사라진 마당에 곧 조선이 中華라는 의식의 발로였던 것이다.³⁾ 이후 숙종은 거의 매해 봄철이 되면 대보단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다.

그 후 40여년이 흐른 1749년(영조25) 영조는 대보단의 증축을 천명했다. 임진왜란 당시 구원병을 보내준 신종뿐 아니라 호란 당시 역시 원병을 보내려고 계획하였던 의종, 그리고 더 나아가 명 태조까지도 대보단에 배향함으로써 명 황실의 제사를 조선에서 지내려는 계획이었다.

처음 영건 당시 대보단은 임란 때 원병을 보낸 신종만 배향하였으므로 의종과 명태조의 신위를 배향하려면 그 크기가 좀 작은 듯 했다. 영조 역시 대보단의 크기가 작다고 여기고 있었다. 더욱 단을 크고 높게 설치하려는 그의 의지는 단호하였다. 大報壇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明 三皇을 合祀하

2) 『숙종실록』 권40, 숙종30년 12월 21일

3) 『숙종실록』 권41, 숙종31년 3월 9일

겠다는 영조의 의지가 표출되자 곧바로 增修 공사가 착수되었고 채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대보단 증축 사업은 마무리되었다.

증축 당시 많은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영조는 차례대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고 급기야 밤을 지새울 듯한 일종의 시위를 벌여 신하들의 반대를 꺾는 고집도 보여주었다. 그만큼 대보단 증수 작업에 대한 영조의 의지는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본 증축 사업을 마무리한 후 수개월 뒤인 1749년 9월 제작된 『대보단증수소의궤』는 당시 영조의 정치적 결단과 정세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물이다.⁴⁾ 이 글은 바로 당시 제작된 의궤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대보단 증수 과정을 밝히고 그 의의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1. 明 毅宗과 太祖의 추가배향

1) 明 毅宗의 大報壇 配享

1749년 대보단 增修의 발단은 『皇朝史』가 전래되어 明 毅宗의 歷史가 알려지면서였다.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이 남한산성에 포위된 조선의 국왕 인조를 구원하기 위하여 병사를 보냈지만, 명나라 군사들이 바다를 건너기 전 조선이 청에 굴복하고 말았고 이에 의종은 군사를 빨리 출동시키지 않은 山東省 巡撫使 顏繼祖를 꾸짖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1749년 3월 1일 應教 黃景源의 계문에서 밝혀졌다.

신이 『明史』 『朝鮮傳』을 보았더니, 『1637년(崇禎 10) 정월에 조선이 急變을 고하자, 황제가 摠兵 陳洪範에게 各鎮의 舟師를 조발하여 나아가 구원하도록 명하였는데, 3월에 진흥범이 아뢰기를, 『군사가 바다로 향해 나아가간 지 수일 만에 山東巡撫使 顏繼祖의 보고를 받아보니, ‘조선이 이미 패전하여 강화도가 벌써 함락되었고 세자가 사로잡혔으며, 국왕이 나아가 항복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황제가 안계조에게 협력을 도모하여 구원하지 못하였음을 통렬히 책망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

4) 『대보단증수소의궤』는 모두 4권이 제작되었는데 각각 춘추관, 예조, 강화부, 의정부에 분상된 것이다. 현재 규장각에는 예조 分上用 의궤가 전한다. 한편 일본 궁내청에도 태백산본이 한 부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대개 청나라 병력이 12월에 조선에 침입하였지만 明史에 정월이라한 것은 조선에서 정월에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며, 지체하고 나아가지 못한 것은 겨울이라 가지 못한 것입니다. 택당 이식의 문집의 진홍범의 帖文에 답한 글을 보면 날마다 대군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겨울이라 쉽지 않았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毅宗이 진홍범에게 군사를 이끌고 속국을 구원하라 하였으니 비록 진홍범의 군사가 바다를 건너오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조선은 君臣父子의 은혜를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배가 오지 않은 것을 논하겠습니까? 더구나 의종은 우리가 능히 성을 지키지 못한 것은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안계조에게 잘 구원하지 못하였음을 책망하였으니, 그 속국을 불쌍히 여기고 염려한 은혜는 우리 의종 같은 이가 없었습니다. 신이 듣건대 宋時烈이 문인들로 하여금 화양동에 묘를 세우고 신종과 의종 두 황제를 제사지내도록 하였는데, 지금 皇壇에서는 의종을 제사지내지 않으니 신은 적이 마음이 상합니다. 지난날 우리 숙종 임금께서 갑신년(1644년)에 의종이 죽은 달이 다시 돌아오자 궁궐의 後園에서 의종에게 望祭를 지냈으니 만일 숙종 임금께서 『조선전』의 古事를 알았다면 어찌 한번으로 제사를 마감했겠습니까? 이제 『明史』를 고증하시고 널리 신하들에게 물어 의종을 신종과 함께 황단에 제향한다면 천하가 다행스럽게 여길 것입니다.⁵⁾

노론이었던 황경원은 송시열이 이미 화양동에서 신종 뿐 아니라 의종도 제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숙종 대에도 의종의 제사를 지낸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대보단에 신종뿐 아니라 명 의종도 배향하는 것이 의리임을 논설하고 새로 입수된 『明史』 『조선전』을 보니 명 의종의 구원 의지가 분명하므로 자신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음을 강조하였다.⁶⁾

이미 명 의종의 대보단 배향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영조는 당시 弘文館에 소장되어 있는 『명사』 『조선전』을 가져오도록 명령하고 직접 옹고 황경원에게 해당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였다. 이에 감응한 영조는 숙종대 대보단 창설 사업을 기록한 『皇壇瞻錄』⁷⁾과 홍계희의 집안에 가장되어 있는 대보단 창설 과정의 논의를 수록한 『皇壇筵說』⁸⁾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나아가 皇壇의 儀節을 널리 여러 原任大臣 들 및 朝野의 학자들에게 묻도록 하였다.

5) 『大報壇增修所儀軌』 [傳教秩] 1749년 3월 1일

6) 숙종대 대보단 初建 당시에도 소론보다는 노론계 인사들이 대보단 창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정옥자, 1985 앞의 논문 참조)

7)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大報壇瞻錄』 (규 12894) 참조.

8)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大報壇事筵說』 『奎3232』). 본 筵說을 중심으로 숙종대 대보단 창건 과정을 정리한 글이 각주1)의 논문이다.

다음날인 1749년 3월 2일 대신과 예조 당상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영조는 皇壇에 명 의종을 배향하는 것이 의리상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옛날 皇壇을 설치한 것은 임진년에 再造해 주신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의종 황제 때에는 천하의 형세가 어떠하였는데, 장수에게 出師를 명하여 외방의 藩國을 구원하게 하였고, 또 조선이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만 그 장수가 잘 협력하여 구원을 도모하지 못했다고 꾸짖었으니, 그 감동하여 눈물을 흘림이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이것은 실로 임진년의 은혜와 다를 것이 없는데, 어찌 신종과 함께 제사지내는 전례가 없을 수 있겠는가?’라는 논리였다.⁹⁾

이에 영의정 金在魯 역시 숙종대 후원에서 의종을 제사지낸 예가 있으며, 비록 대보단이 명 신종만을 위해 설치된 것이기는 하지만 의종을 배향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건의하였다.

3월 19일은 곧 의종 황제께서 사직을 위해 돌아가신 날이므로, 先朝 갑신년에 옛날 갑신년이 거듭 돌아오자 後園에서 의종 황제를 제사지냈던 것입니다. 비록 大報壇은 애초에 신종황제만을 위해 설치한 것이지만 조선의 臣民들이 대대로 皇朝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명태조부터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情禮를 다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신종께서 천하의 힘을 다하여 망해가는 朝鮮을 재조시켜 주었으므로 특별히 이를 위해 대보단을 설치했던 것입니다.¹⁰⁾

구원병을 직접 조선에 보낸 신종의 재조지은이 더욱 특별하다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의종 심지어 명태조를 배향한다고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말이었다. 예조 판서 金若魯는 두 황제를 모두 황단에 배향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역시 만력 황제(신종)는 천하의 군사를 동원하였고, 승정 황제(의종)는 군사를 보냈다가 즉시 거두었으니, 德意의 경중이 없지 않다는 단서를 달았다.¹¹⁾

이에 영조는 ‘신하나 아들이 받은 은혜의 두텁고 얇은 것을 가지고 임금이나 아버지를 섬긴다면 이런 신하와 아들을 어디에 쓰겠는가? 崇禎 때의 상황

9) 『영조실록』 권69, 영조25년 3월 1일(실록에는 1일, 의궤에는 2일로 기록되어 있다)

10) 『大報壇增修所儀軌』 [傳教秩] 1749년 3월 2일

11) 『영조실록』 권69, 영조25년 3월 1일.

을 생각해 보건대, 청나라 병사가 遼陽에 가득하고 流賊이 中原에 두루 널려 있었다. 그런 중에도 오히려 바다를 건너 멀리 군사를 보내어 속국을 구원하려 하였으니, 밤중에 이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렀다. 한 칸의 사당을 마련하여 昭王을 제사지내는 일이 어찌 靑丘에 있지 않은가? 만약 先朝께서 『明史』를 보셨다면 조정 신하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함께 배향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만일 숙종 임금께서 『明史』를 보셨더라면 대보단에 반드시 두 황제를 合祀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미 대보단에 두 황제를 추가 配享하려는 영조의 의지가 분명하였으므로 다른 신하들이 이에 반대하기가 어려웠다. 노론들 역시 스승 송시열이 신종 및 의종을 배향한 적이 있었으므로 국가에서 대보단을 만들어 송시열의 의리를 이어받는 데 異意가 없었다. 다만 이전에 신종 황제만을 배향하던 儀式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절차상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 추가배향의 가부 및 儀禮를 결정하자는 주장이었다.

聖上の 下敎가 슬프고 간절합니다. 대저 동방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大明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東土의 신민이 대명을 섬김에 어찌 감히 몸과 살을 아끼겠습니까? 그러나 대보단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역사에 없었던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임금과 아버지를 섬길 적에 은혜의 두텁고 얇은 것으로써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그러합니다만, 祖功宗德 역시 제사의 전례상 높고 낮은 절차가 있는 것이니, 바로 의리의 지극히 정밀한 것입니다. 널리 유신들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¹²⁾

좌의정 趙顯命의 上言이었다. 곧바로 영조는 예조판서와 대신들을 인견하였다. 다시 한번 숙종 대 후원에서 치른 의종의 제사를 상기시킨 영조는 숙종의 뜻이 이미 그와 같다면 신종과 의종을 함께 배향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제 영조 자신이 『명사』를 보니 더욱 그 재조지은의 생각이 간절하다면서 의종을 신종과 함께 배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막중한 일은 여러 대신들과 儒臣들에게 널리 물어서 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교하였다. 이에 여러 신하들은 임금의 뜻이 이미 그리 강한데 어찌 다른 뜻을 내 비치겠는가?라고 답하는 것으로 동의에 대신하였다.

12) 『大報壇增修所儀軌』 [傳教秩] 1749년 3월 2일

2) 大報壇 증설 공사의 추진

대보단 증수 의지를 분명히 한 영조는 몸소 대보단에 가보고 협소하지만 그런대로 두 황제를 奉安할 만하다면서도 한번 살펴보고 증축의 문제를 논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金尙魯 등은 대보단의 증축 여부를 직접 살펴본 후 다시 의견을 드리겠노라고 답변하였지만 이미 대보단 확장을 결심한 영조에게 신하들의 大報壇 奉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당시 대보단의 壇石이 불과 4층이므로 단지 10여개의 石材만 있으면 증축이 가능하다고 계산하고 석재 준비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영조는 알고 있었던 터였다. 이미 박문수로부터 東郊의 석재가 충분하여 대보단 重修는 문제없다고 들은 바 있었기 때문이다. 석재의 구득이 쉽다면 단지 10여일 만에 증축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한 영조는 일을 서둘렀다. 대신들에게 빨리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재촉하고 숙종대 대보단 初建의 사례를 참조하여 都監을 따로 설치하지 말고 예조, 호조, 병조의 堂上들이 증수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한편, 박문수는 이왕 대보단을 증수하기로 하였으니 부속 건물들도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典祀廳을 신축하지는 논의였다. 매번 호조에서 遮日을 빌려다가 사용하였는데 아예 전사청을 만들어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이었다.¹³⁾

다음날 1749년 3월 3일 영조는 대보단 증수의 봉심 결과를 알리라고 명하였다. 봉심 결과 증축이 결정되고 3월 5일 새로 예조판서에 부임한 李周鎭은 여러 가지 증축에 관한 실무적인 일들을 준비하였다. 가령 숙종 갑신년 황단 役事시에 壇門 내외의 담장을 쌓는 일과 문을 만드는 일 등을 모두 紫門監¹⁴⁾에서 감역하였고, 궐내 각처의 대소 공사 역시 자문감에서 監役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이를 따라 이번 대보단 증수 공사도 자문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皇壇 奉審시에 자문감 감역 金鳴魯가 대령하였는데 尺量을 재는 등 일 처리가 매우 정밀하다며 추천하였다. 이외

13) 『大報壇增修所儀軌』 [傳教秩] 3월 2일

14) 조선 시대에, 선공감에 속하여 궁중의 건축 수리와 토목 공사를 맡아보던 관아.

樂章은 겸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 악장을 지어야 한다고 주청하는 등 대보단 증수 및 의종의 배향에 대한 각종 儀節들을 준비했다.¹⁵⁾

대보단 증수시 제일 큰 관심은 증수의 규모,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증축할 것인가였다. 3월 8일 영조는 대보단에 親臨하고 望慰禮가 파하자 대보단 위에서 여러 신하들을 인견한 후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다. 영조는 이미 尹光紹 등에게 『대명집례』의 圖說 등을 살펴보고 모사하여 자신이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명해두었는데, 예조판서 이주진이 園丘元圖와 陳設圖를 모두 모사하였음을 알려오자 이를 열람하고는 황단의 증수와 모양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영조는 壇 앞에 築을 1척 반 높이로 쌓고 단 뒤에 築은 5척 반으로 쌓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는 舊壇의 높이가 4척 2촌이므로 2층을 더 쌓는다면 2척을 합해 6척 2촌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윤광소는 壇의 높이가 6척 2촌이니 차라리 1촌을 더 쌓아 九九의 수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대보단 증수시 높이는 6척 3촌으로 결정되었다.

이밖에도 영조는 神御倚의 조각을 상의원 관원들이 공장들을 데리고 가서 살피고 감독하도록 명하고, 神室의 남변에 제1위를 봉안하고 神榻의 북변에 제2위를 奉安한 후 神榻에는 ‘아무개 位’라고 쓰도록 하는 등 배향 儀節도 결정하였다. 직접 대보단 증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처럼 보이는 영조는 심지어 祭床을 옮겨다가 둘 장소에 대해서도, 西邊 樓下庫에 두겠다는 예조판서 이주진의 건의를 반박한 후 이곳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칠한 후 사용하겠다는 박문수의 말을 따랐다.

실제 대보단 증수 과정의 실무 작업은 당시 호조판서였던 박문수가 담당하였다. 영조는 박문수가 ‘石手를 동원하여 治石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므로 각 군문과 내수사에게 명하여 이들을 모도 起送하여 시간 안에 치석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라고 계문을 올리자 호조판서의 말에 따르도록 윤허하였고, ‘애초에 황단 설치시에 領役部將 3인을 두기로 하였는데 지금 治石과 運石 이외에 또 典祀廳 조성 공사가 있으므로 한 명을 더 加定하도록 하고 각 군문에서 영리한 장교를 택정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자

15) 『大報壇增修所儀軌』 [傳教秩] 3월 5일

역시 그대로 결정하였다.

한편 박문수는 典祀廳을 새로 만드는 일 역시 중요한데다가 이를 위해 목재 확보가 시급하므로 선혜청에서 창고를 만들고 남은 목재를 가져다 사용하기로 건의하고 이를 허락받았다. 또한 대보단 증수에 동원될 工匠의 경우도 대부분은 각 아문이나 군문 소속을 막론하고 일을 잘하는 자들을 추려 赴役시키도록 하였다. 이는 예조판서 이주진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¹⁶⁾

3월 12일 많은 신하들은 영조가 명나라 두 황제의 배향을 위해 대보단을 증수하니 매우 찬양할만한 일이라고 칭송하였다. 예조판서 이주진은 계문을 올려 이미 대보단 증수과정에서 典祀廳도 마련하였으니 太廟와 社稷의 경우를 따라 皇壇에도 樂工廳을 영건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그리고 호조판서 박문수는 자신이 당일 끝내에서 장악원제조 金尙星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대보단 제사시에 악공이 백 여명인데 혹 비를 만나게 되면 악공과 악기들이 모두 젖어 문제가 되므로 악공청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 하였다면서 樂工廳의 신축도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청하였다. 영조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모두 만들도록 분부하였다.¹⁷⁾

이밖에 예조판서 이주진은 사소한 듯 보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儀禮들을 임금 영조에게 건의하여 처리하였다. 대보단 俎床의 색 문제라든지,¹⁸⁾ 술잔의 격식,¹⁹⁾ 제기 제조²⁰⁾ 등이 그것이었다.

16) 이상 『大報壇增修所儀軌』 [傳教秩] 3월 8일

17) 위의 책, [傳教秩] 3월 12일

18) 위의 책, [傳教秩] 3월 12일: 예조판서 이주진은 俎床의 양 끝이 모두 붉은 색이고 가운데를 흑색으로 칠하는 것이 『五禮儀』에 실린 내용인데, 황단의 조상을 보면 모두 검은 색을 칠하고 가운데를 적색으로 칠하였으므로 범식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大明集禮』을 살펴보니 양끝이 모두 적색이고 가운데가 흑색인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19) 위의 책, [傳教秩] 3월 12일: 예조판서 이주진은, 대보단 제례 술잔인 祭爵의 龍頭가 우측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 대보단 제례에 사용될 祭爵의 용두를 보면 모두 좌측에 있으니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건의하였고 이에 영조는 용두는 마땅히 좌측에 있어야 하므로 이주진의 말대로 하라고 분부하였다.

20) 위의 책, [傳教秩] 3월 12일: 이주진은, 황단의 제기를 봉상시에 두었다가 일찍이 병인년에 대보단의 樓上庫에 두었다고 말하고 이제 황단을 증수하면서 제기 한 세트를 새로 더 만들어야 하는데 대보단 근처에서 제기를 제작하게 되므로 수 많은 제기를 제작하고 교체하는 일이 불편하므로 옛 제기들을 봉상시 관원들

대보단 증수에 관한 여러 가지 실무 지침들이 마련되자 3월 14일 영조는 예조로 하여금 날을 추택하여 공사를 거행하도록 분부하였다. 그리고 모든 공사의 事目은 숙종대 대보단 初建 당시 사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毅宗의 제문 역시 숙종대 神宗의 제문을 근거로 짓도록 하였다.²¹⁾ 영조대 증수 공사 시에 도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바로 숙종대의 前例를 따른 것이었다.²²⁾

<표 1> 예조가 推擇한 대보단 공사일정²³⁾

내역	일정
舊壇 철거	3월 22일 卯時
奉室	開基: 3월 25일 卯時(남쪽에서 시작) 定礎: 3월 27일 申時 豎柱: 3월 28일 卯時(북쪽부터 시작) 上樑: 3월 28일 申時 蓋瓦: 3월 29일
典祀廳	開基: 3월 22일 卯時 豎柱: 3월 28일 午時(북쪽 기둥부터 시작) 上樑: 3월 28일 申時
宰牲廳	開基: 3월 22일 卯時 豎柱: 4월 1일 卯時(북쪽 기둥부터 시작) 上樑: 4월 1일 未時
樂工廳	開基: 3월 22일 卯時 豎柱: 4월 2일 午時(북쪽기둥부터 시작) 上樑: 4월 2일 酉時
親臨후 誓戒	4월 4일
親臨후 望慰禮, 省牲 및 省器	4월 10일
親祭	4월 11일

한편, 예조 등에 의해 공사 일정이 잡히고(<표 1>참조) 본격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면서 대보단 증수를 담당할 관리들 역시 선발되었다. 大報壇 役所의 堂

로 하여금 모두 工曹로 이전해 두게 하는 것 등을 논의하였다.

21) 『大報壇增修所儀軌』 [傳教秩] 3월 14일:

22) 위의 책, [啓辭秩] 3월 15일

23) 이상의 일정은 위의 책, [공사 내역 및 擇日] 참조.

上은 공조판서 조관빈, 예조판서 이주진, 호조판서 박문수 등이 담당하고, 낭청에는 호조정랑 이경조, 예조정랑 이석록, 공조좌랑 이정미가 差定되었다. 別工作 감역관에는 자문감 감역 김명노가, 황장방 감조관에는 김도건이, 算員에는 최한추, 최응상 등이 차출되었다. 이밖에 서리들이 여럿 필요하였는데 강후상을 예조에서 차출하였고, 김상옥과 노유신·이오성은 공조에서, 이순강·이홍문은 예조에서, 조운화·김세태는 호조에서 선발하였다. 서서관에는 최윤홍(예조)이, 庫直에는 김태일(병조)이 차출되었다. 각종 심부름을 도맡아 할 使司에는 전수홍(선혜청), 남대철(호조), 김찬(사재감), 박세휘(군기시), 원봉이(병조), 이인태(공조), 한명남(사복시) 등이 차출되었고 김윤해는 雇立이었다. 마지막으로 수직군사 2명과 포도군사 12명이 동원되었다.²⁴⁾

3) 明 太祖의 추가 配享 논의

황단의 증수와 전사청 및 악공청의 신축이 결정되고 물종 준비 작업이 완료되자 이제는 황단 제사의 여러 가지 儀節을 확인하였다. 특히 신종만을 제향하던 숙종대 대보단에 비해 이제 의종을 추가로 배향하면서 神位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제일 문제였다. 둘째는 의종은 3월에, 신종은 7월에 제향을 각각 지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였다. 세번째는 배향할 신하들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단을 증축하는데 너무 규모가 커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었다.

3월 18일에 皇壇 役所 세 명의 堂上和 약방도제조 등이 입진하였을 때, 영조는 승지 원경하에게 皇壇儀를 읽어보라고 명하였다. 당시 좌참찬 원경하가 皇壇儀를 준비하였는데, 영조는 이를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서 여러 신하들에게 준비한 의례가 어떠한지 물은 것이다. 좌참찬 원경하는 준비한 皇壇의 儀節을 進御하였다. 신종과 의종의 神位를 예법에 맞춘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論旨였다.

태조와 태종을 함께 원구단과 大報祀에 배향한 것에 대하여 給事中 夏言이 상

24) 『大報壇增修所儀軌』 3월 15일 [座目]참조

소하기를, ‘부자를 같은 반열에 모시는 것은 경전을 상고해 보면 의심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禮臣이 이를 논박하여 말하기를, ‘태묘의 제사는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 昭穆이 적용되어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향하여 있으므로 并列의 형의는 없으며, 더구나 태조와 태종의 공덕은 모두 높아서 하늘과 짝이 되니 하나라도 빠뜨리면 마땅하지 못하다.’라고 하였습니다. 『世宗報』에 이르기를, ‘禮臣이 태묘에는 한 堂에 모셔도 형의스럽지 않음을 이끌어 대었는데, 대저 昭는 남쪽으로, 穆은 북쪽으로 하여 부자가 함께 앉지 아니하고 손자는 大父를 따르는 것이 곧 三代를 함께 제사지내는 禮인데, 禘라고 하는 말은 함께 제사 지낸다는 말이며, 이것이 소와 목의 높고 낮은 뜻이니, 손자는 할아버지에 祔하는 것이다. 僖祖는 東向하게 하고 태조는 오른쪽에 배향하였으니 그 출자를 높이는 뜻이며, 자신을 낮추고 할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예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자 때문에 높아지고 손자는 할아버지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니 神道와 人情에 구하여 보아도 역시 편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 황제를 제사함에 있어서 皇朝의 典禮를 따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약에 할아버지와 손자를 함께 동향하면 이것은 祖位의 높음이 낮아져서 자손의 소목의 향렬이 앞으로 폐지될 것이니, 급사중 夏言으로 하여금 이 거조를 보게 한다면 예에 합당하다고 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神宗을 東向의 자리에 모시고 毅宗은 소목의 향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대체로 그렇게 한 뒤에야 할아버지는 손자보다 높아지고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祔廟하는 것입니다.²⁵⁾

영조는 皇壇의 儀節을 정하는 일이 지극히 중차대한 것이므로 원경하의 의논만으로 결단할 수 없다고 보고 대신과 유신들의 의견을 주문하였다. 3월 19일 영의정 김재로가 上言하였다. 그는 원경하의 주장에 반대하여 신종을 上位에 놓고 의종을 아래에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신종이나 의종 모두 하늘이므로 같은 반열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²⁶⁾

며칠 동안 대보단에 두 황제를 배향하는 문제로 신하들의 논의를 들던 영조는 신종과 의종 뿐 아니라 명 태조인 高皇帝마저 대보단에 배향하지는 뜻을 내보였다.²⁷⁾ 3월 23일 대보단 役所의 예조, 호조, 병조 세 당상들이 모두 입시한 날, 영조는 歡慶殿에 거동하여 비로소 자신의 본의를 말한 것이다. 의종을 추가로 배향하면서 아예 명태조마저 배향함이 어떨지 넋지시 물었던 것이다. 명태조인 高皇께서 ‘조선’이라는 國號를 하사하였다는 말이 역사적으로

25) 『大報壇增修所儀軌』 [전교집] 3월 18일

26) 위의 책, [전교집] 3월 18일

27) 이하 내용은 위의 책, [전교집] 3월 23일 참조

옳은가?라고 신하들에게 질문하면서 영조는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이에 조판빈이 ‘조선 개국 초에 명태조가 기자 조선의 舊號로 조선이라는 국호를 하사하였다’는 史實을 아뢰자, 영조는 三皇을 一壇(대보단)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면서 신하들의 뜻을 물은 것이다. 신하들에게可否를 솔직하게 진달하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명태조께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하사하신 일을 생각하면 큰 은혜를 잇을 수 없다면 눈물까지 흘려 보이는 영조의 의지는 분명한 것이었고 이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현명은 三皇의 대보단 배향을 비판했다. 조선의 臣民들이 大明의 은혜를 잇을 수 없는 것이요, 이에 명나라 황제 모두를 배향해도 은혜를 갚을 길이 없겠지만, 三皇을 황단에 모신 예는 禮經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전례가 없으니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특별히 숙종 임금께서 단을 설치하고 ‘대보’라 한 것은 임진란의 재조지은을 잇지 못한 것이었으니, 지금 高皇(명태조)을 竝享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었다.

사실 숙종대 初建된 대보단에는 神宗만이 배향되어 있었고, 이에 영조가 毅宗마저 배향하겠다는 뜻을 비치자, 소론들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을 뿐 노론은 매우 적극적인 동조를 보였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 신종과 의종 뿐 아니라 명태조도 배향하면서, 명에 대한 재조지은의 祀典을 조선 왕실에서 專擔하려는 의도를 영조가 내보이자, 노론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老論들의 입장에서 보면, 화양동의 二皇(신종과 의종) 配享을 인정하고 이를 국가의 祭典으로 흡수함으로써 송시열의 절의를 강조하는 것은 수궁할 수 있지만, 대보단이 명 황조 전체에 대한 祀典으로 확대되어 송시열의 신종과 의종에 대한 竝享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염려스러웠다. 대보단이 명 황조에 대한 조선 왕실의 적통만을 강조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조현명의 말을 모두 듣고 난 후 영조는 신종의 경우 再造의 은혜가 있다고 하지만, 명태조 高皇은 ‘大造’의 은혜가 있는 것이므로 근본을 잇어서는 안 된다고 질책하였다. 이번에도 조현명은 굽히지 않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天子가 藩邦에 국호를 내려준 것은 큰일이지만 이 역시 다른 例典이 있으므로 임진왜란 당시 동쪽으로 원병을 보내서 구원한 사실과는 다른 일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원경하는 조현명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영조 역시 조현명을 비판하는 원경하 편을 들었다. 물론 신종의 再造之恩에 대한 보답으로 숙종께서 대보단을 만들었지만 지금 와서 대보단을 증축하여 毅宗마저 배향하려는 마당에 이들이 出系한 명 태조를 함께 享祀하는 것이 그리 문제이겠는냐는 비난이었다. 덧붙여 시초에는 태조가, 중엽에는 신종이, 끝에는 의종이 조선에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들을 배향하는 것에 대해 송시열조차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영조의 의지는 이미 확고해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보단 증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박문수가 명 태조의 배향은 문제라며 다시 한번 異意를 제기하였다. 신종과 의종의 배향은 ‘大報’의 뜻에 부합하지만 高皇을 배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였다. 이에 영조는 어찌 국호를 내린 것이 大報의 대상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문수는 명태조의 배향은 절대 안 된다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경하는 박문수의 無智를 꾸짖었다. 어찌 여러 대신들은 高皇께서 국호를 내린 것이 ‘大報’할만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대보단에 배향해서는 안 된다는 모순되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었다.

신하들 사이의 논박이 벌어졌다. 오로지 원경하만이 영조의 입장을 지지하여 다른 이들의 논설을 비판하였다. 고향의 대보단 배향을 반대하는 주요 논지는 제후국에서 천자를 제사지낸 적이 古來로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현명 역시 선조부터 高皇을 祭享하는 논의가 없었으므로 지금 가볍게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자신의 뜻을 밝혔다.

영조는 직접 나서서 문제를 정리하였다. 왜 자신이 고향을 대보단에 배향하려는지 설명하였다. 명 황조의 祭壇의 香火가 이미 끊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한 영조는 明 皇朝가 中興하였다면 어찌 조선이 이들을 제사하겠는가? 만일 명이 그대로 있는데 조선이 三皇을 배향하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명이 망하였으므로 조선이 대신 제향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며 신하들을 질책했다.

그럼에도 여러 신하들은 쉽게 영조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3월 23일 2경[9시에서 11시 사이] 3점에 영조는 集瑞門으로 나아갔다. 正殿에서는

불안하여 이곳으로 나와 앉았으니 조상들이 서려있는 듯하다고 말한 영조는 김선행에게 숙종의 御製를 읽어보라고 명하였다. 이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던 영조는 자신이 불효 불충한 사람이라고 자책하였다. 그리고 300년 명황의 은혜를 ‘大報’하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였으면 좋으냐는 뜻으로 신하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대보단에 명 태조의 配享을 추진하려던 영조는 신하들의 반대가 생각보다 완강하자 밤 늦도록 정전에 들어가지 않은 채 일종의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렇게 되자 신하들은 이미 임금께서 고향을 대보단에 配享하기로 마음먹고 있는데 어찌 다른 말을 드리겠느냐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밤이 늦어 調攝에 불편하므로 정전으로 들어가시고 시위를 풀라고 주문한 것이다. 결국 3월 23일 밤늦도록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신하들을 상대로 눈물로 시위한 영조는 자신의 의지대로 명나라 삼황의 配享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었다.

三皇을 배향하기로 정한 후 남은 일은 序列을 정하는 것이었다. 김재로는 각각 同堂異室²⁸⁾의 제도를 써야 하므로 태조가 가운데 신종과 의종이 각각 좌우로 나누어 서는 것이 좋지만, 金蔭 三壇의 제도를 취한다면 삼황이 각각 단을 사용하므로 서열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添言하였다. 한편, 원경하는 태조를 가운데 거하도록 하고 신종과 의종이 좌우로 배열하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영조는 김재로가 논한 金蔭의 제도가 무엇인지 원경하에 물었고, 원경하는 三壇은 주공의 太王과 王季 文王을 모신 것으로 太廟와는 달리 서열이 필요 없다고 답하였다.²⁹⁾

28) 齋殿의 구조가 외부에서 보면 각 실 앞마다 문이 있어 칸으로 구분된 듯 보이지만 실제 내부는 하나의 공간으로 트여 있는 통칸이 同堂異室이다.

29) 『書經』 『周書』 ‘金蔭篇’의 古事이다. 은나라를 쳐부순 후 2년째 되던 해, 武王이 병이 나서 편치 못하였다. 주공은 제단을 마련하여 先王들에게 빌기를, ‘당신들의 큰 손자(무왕)가 병이 들어 위독하오니, 세 왕들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 자손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면, 저 丕(주공의 이름)의 몸으로 대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어질어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을 따르며 재능이 많고 예능이 많아 귀신을 섬길 수 있을 것이나, 당신들의 큰 손자는 저처럼 재능과 예능이 많지 못하여 귀신을 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이글은 쇠줄로 묶은 상자[金蔭]에 담아 후세에 전해졌다.

영조는 三皇을 배향하기로 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였으므로 配享의 방법은 김재로의 논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지형을 살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한 후 결정하도록 하고 호조판서 박문수의 건의를 좇아 예정대로 三壇으로 정하였다. 제1단에는 태조를 제2단에는 신종을, 그리고 제3단에는 의종을 배향한 것이다. 그리고 壇의 높이는 12尋³⁰⁾으로 정하고, 壇는 300보로 결정하였다. 한편 三皇을 제사지낼 때 필요한 祭文과 樂章 등을 모두 새로 만들도록 하였다.

2. 대보단 공사와 의궤 제작

1) 物種의 준비 및 공사 시작(3월 22일 이전)

본격적인 공사 준비는 이미 3월 14일부터 시작되었다. 대보단 役所가 곧 마련될 것이었으므로 호조, 예조, 공조, 지문감, 典設司, 長興庫, 豐儲倉, 濟用監, 繕工監, 사도시, 군자감, 광홍창 등에 甘結을 보내 황단 증축 공사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각각 맡은 바 사령이나 서리 등을 차출하도록 하고, 황단 役所에서 사용할 초주지 10장, 厚白紙 1권, 아교 가루 1승, 백휴지 2근, 황필 8자루, 眞墨 4자루, 벼루 3개 등을 빨리 준비하여 納入하라고 해당 아문에 명령하였다. 이밖에 서리들이 머물면서 문서를 제작하고 처리할 문서청은 假家로 만들기로 하고 집을 짓기 위한 土火爐, 土烽爐 각 3좌를 준비하라고 호조에 甘結을 보내기도 하였다.³¹⁾

한편 3월 15일이 되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22일부터 매일 대보단 증수에 차출된 관리들이 役所에서 直宿하여야 하므로 이때 필요한 기름과 쌀감, 등잔에 사용하는 면화심지 등을 준비하도록 명하였다. 이뿐 아니라 황단 증수 역소의 당상과 낭청들이 坐起하는 방의 온돌을 데워야 하므로 매일 쌀감 반 단씩을 준비하도록 호조와 사재감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병조에 명하여 庫直을 한 명 차출하여 역소에 보내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대보단 증수 역소가 창

30) 1십이 8척이다.

31) 『大報壇增修所儀軌』 [甘結秩] 3월 14일

덕궁 서쪽 담장 曜金門 안 中日廳이었으므로 수직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사환과 사령들 역시 각각 5명씩으로는 부족하므로 영리하고 성실한 자로 각각 한 명씩을 더 차출하라고 군기시, 장흥고, 사재감 등에 명하였다.

黃帳房 감조관을 숙종 연간의 대보단 初建 당시의 예에 따라 典設司에서 차출하였으며, 大報壇 역소의 募軍들에게 밥먹을 시간을 알리기 위하여 大鑼, 大鼓 각 1대씩이 필요하므로 군기시에서 이를 빌려 사용하고 돌려주기로 하였다.³²⁾ 마지막으로 공복문을 열어 두어야 하므로 병조에 명령하여 部長을 하나 정하여 지키도록 해 두었다.³³⁾ 3월 16일에는 본격적으로 석재를 운반하기로 하고 五軍門에 명령하였다.³⁴⁾

3월 17일에는 戶曹와 병조에 移文을 보내 황단 증수시에 동원될 工匠들의 급료를 계산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20일 정도 기한을 정하여 匠人들의 급료를 계상한 결과 米 110석 8두, 木 6동 20필이 정해졌다.³⁵⁾ 이외 공조에 옹기 하나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며 移文을 보냈으니 神御榻 제작시 장인들이 사용할 것이었다. 그리고 神御榻 제작시 장인들이 사용할 손 씻는 작은 물 옹기 하나, 方丈里 하나, 백사발 하나, 手巾布 5척 등을 호조, 공조, 제용감, 내섬시, 내자시로부터 진배하라고 명하였다. 사용하고 돌려줄 것들이었다.³⁶⁾ 이외 목재와 貫子 등을 자문감에서 대여하였다.³⁷⁾ 모두 사용하여 여분이 없는 후백지는 2권을 더 보내라고 호조와 장흥고에 감결을 보내기도 하였다.³⁸⁾ 마지막으로 황단 역소의 야간 巡直 문제를 左右捕廳과 巡廳에 지시하고³⁹⁾ 三軍門에도 이문을 보내 황단 役所 주변에 禁標를 설치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명하였다.⁴⁰⁾

32) 이상은 『大報壇增修所儀軌』 [甘結秩] 3월 15일 참조.

33) 위의 책, [啓辭秩] 3월 15일

34) 위의 책, [移文秩] 3월 16일

35) 위의 책, [移文秩] 3월 17일

36) 위의 책, [甘結秩] 3월 17일

37) 위의 책, [甘結秩] 3월 17일

38) 위의 책, [甘結秩] 3월 17일

39) 위의 책, [甘結秩] 3월 17일

40) 위의 책, [移文秩] 3월 17일

3월 18일에는 어영청과 장흥고 그리고 관상감 등에 이문을 보내 물종과 장인들의 징발을 서둘렀다. 각종 제상과 탁자 조성시에 각 군문과 내수사 工匠을 막론하고 取用하기로 하고 御營廳 소속의 小木匠 유노미를 급히 보내도록 하였으며,⁴¹⁾ 관상감에는 황단에 소용할 祭床과 탁자 등을 제조하는데 관상감 소목장 이진옥이 필요하므로 빨리 보내라고 성화하였다.⁴²⁾ 物種의 경우 算員들이 사용할 백휴지 2근과 黃筆이 필요하므로 호조와 사삼시 등에게 명하여 納入하라고 명하였다.⁴³⁾ 이날 長興庫에서는 관문을 보내 使喚과 使令 1명씩을 차출하여 보낸다고 알려졌다.⁴⁴⁾

3월 19일에는 황단 역소의 堂上들이 황단 출입시 사용할 雨傘 3개를 돌려 주기로 약속하고 호조와 선공감에 성화하였다.⁴⁵⁾ 그리고 선혜청에는 황단 역소의 樂工廳 5칸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재목을 보내도록 명하였다. 내역은 樓柱 19개, 宮材 60개, 재목 40개 등이었다.⁴⁶⁾ 이밖에 神御榻 조성시 彫刻匠이 사용할 油紙 3장과 畫筆 3자루 먹 등을 보내라고 호조와 공조 등에 성화하였다.⁴⁷⁾

3월 20일이 되자 물종 준비와 증수 작업이 더욱 바빠졌다. 神御榻 조성에 동원된 豆鋸匠이 사용할 陶罐을 제조하기 위해 白土 한 짐을 보내달라고 경기감영에 명령하였고,⁴⁸⁾ 훈련도감에는 鑄匠이 사용할 池右龍身을 급히 보내도록 명하였다.⁴⁹⁾ 선공감, 군자창, 별공작에는 御榻 조성시에 장인들이 머물 仮家 3칸을 짓는데 필요한 가마니 등을 보내라고 명령하였다.⁵⁰⁾ 이밖에 어탐 조성시 장인들이 사용하는 상어 가죽, 木賊 등의 부족분을 호조, 공조, 선공감 등에서 진배하라고 성화하였다.⁵¹⁾

41) 『大報壇增修所儀軌』 [移文秩] 3월 18일

42) 위의 책, [甘結秩] 3월 18일

43) 위의 책, [甘結秩] 3월 18일

44) 위의 책, [來關秩] 3월 18일

45) 위의 책, [甘結秩] 3월 19일

46) 위의 책, [移文秩] 3월 19일

47) 위의 책, [甘結秩] 3월 19일

48) 위의 책, [移文秩] 3월 20일

49) 위의 책, [移文秩] 3월 20일

50) 위의 책, [甘結秩] 3월 20일

51) 위의 책, [甘結秩] 3월 20일

증수 개시일 하루 전인 3월 21일에는 공조판서 趙觀彬, 예조판서 李周鎭, 호조판서 朴文秀 등이 입시하였는데 이 때 박문수는, 典祀廳, 宰殺廳, 樂工廳의 柱礎를 모두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데, 拱北門으로 들어오려니 문으로부터 황단 공사 장소까지 담장으로 막혀 있을 뿐 아니라 지세가 매우 높아 좁은 문으로 모두 운반하기가 어렵다고 보고하고, 황단 공사터로부터 남쪽을 향해 일직선으로 담장을 허물고 문을 만들어 기둥 등을 운반한다면 매우 편리하겠다고 계문하여 허락을 받았다.⁵²⁾

다음 본격적으로 공조와 호조 등에 물종 준비를 독려하였다. 호조에는 돌을 나르기 위한 牛車에 동원된 소의 먹이로 쌀 2석과 콩 4석을 급히 보내도록 하였고⁵³⁾ 황단 역소의 軍督이 사용할 大執鐸 3개, 황단 증수 낭청들이 사용하는 印信 1부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군사감과 광흥창에는 황단 증수 공사에 동원되는 장인들과 모군들의 급료를 줄때 사용하는 網席 2장을 사용하고 돌려주기 하였고, 제용감과 공조에는 황장방에 사용할 細木 1동 20필을, 한성부 북부에는 황단 증수에 사용할 皮糠 3두를, 工曹에는 황단 역소에 동원된 募軍 등이 사용할 陶東海 10개를, 호조와 예빈시에는 문서에 작성시 사용하는 阿膠 末 1승을, 瓦書에는 황단 자리에 깔 方輶을 납입하라고 독려하였다.

한편, 상의원과 관상감, 훈국 등에는 장인과 관리를 동원하였는데, 神御榻 제작에 필요한 豆錫匠 한차미를 상의원에 분부하여 대령하도록 성화하였고, 관상감에는 공사 길일과 구단 철거 길일을 정확하게 추택하고 방위를 간심하기 위하여 상지관과 주시관 각각 한 명씩을 22일 罷漏를 기다려 대령하도록 명령하였다.⁵⁴⁾ 그리고 訓局에는 훈국 소속 豆錫匠 金世輝와 朴壽啓 등을 급히 보내도록 분부하였다.⁵⁵⁾ 이날, 浮石 牌將은 180괴의 돌을 새로 뜨는 등 황단에 깔 방식의 채취 준비 상황을 관문을 보내 보고하였다.⁵⁶⁾

52) 『大報壇增修所儀軌』 [傳教秩] 3월 21일

53) 위의 책, [移文秩] 3월 21일

54) 이상은 모두 위의 책, [甘結秩] 3월 21일

55) 위의 책, [移文秩] 3월 21일

56) 위의 책, [來關秩] 3월 21일

2) 본격적인 增修 공사(3월 22일~4월 3일)

3월 22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 부족한 物種이나 장인들의 동원이 더욱 시급해졌다.

3월 23일에는 호조와 군기시에 부족한 魚膠 1근을 빨리 납입하라고 성화하였고, 황단 증수시 서리들이 上直하는 房에 불을 때기 위한 땀감 및 등불을 밝히기 위한 燈油 등을 매일 진배하도록 호조와 사재감에 명하였다. 이어 황단 역소의 남쪽 담장을 부수고 假門을 세우는 문제로 병조와 자문감 등에 급히 役事를 독촉하는가 하면, 공조에는 神御榻 조성에 동원된 穿穴匠 權斗星을 빨리 보내라고 성화하였다.⁵⁷⁾

3월 24일, 박문수는 영조에게 몇 가지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하였다. 祭器를 새로 만드는 일이 잘 되어가는지 영조가 궁금해하자,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이어서 神室을 동쪽 墻門 밖에 신축하기로 이미 聖敎를 받았는데, 신실 移建의 길일을 일관이 추택한 결과 3월 25일 卯時로 擇定되었음을 보고하였다.⁵⁸⁾ 한편 대보단 증축시에 석재가 가장 많이 필요한데 訓局의 車子에 사용할 소들을 건강한지 살펴 運石하도록 분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였다.⁵⁹⁾

이날도 물종의 준비는 다급하였다. 경기감영에 玉砂 5두를 빨리 분송하라고 명한 것으로부터⁶⁰⁾ 神御榻 제작에 사용할 吐絁 1필을 품질이 좋은 것으로 진납하라고 평시서, 호조, 綿絁廳 등에 성화하였고, 神御榻을 칠하는데 사용할 假家 4칸을 새로 만들어야 하므로 이때 필요한 六油菴 3부를 장흥고, 호조 등에 납입하도록 명하였다. 역시 神御榻을 조성하는데 小木匠들이 사용할 綿絲 2냥을 호조와 체용감에 성화하여 납입하도록 하였다.

工匠들의 동원이 여의치 않자 다시 한번 기관에 명하였다. 먼저 황단의 祭床 및 桌子 조성에 상의원 조각장 임이동과 조선대 등을 차출하도록 성화하

57) 이상은 『大報壇增修所儀軌』 [甘結秩] 3월 23일

58) 위의 책, [禮關秩] 3월 24일: 神室을 墻門 밖에 移建하는 일로 길일을 추택한 결과 3월 25일 묘시가 좋다고 예조에서 알려왔다.

59) 이상은 위의 책, [傳敎秩] 3월 24일

60) 위의 책, [移文秩] 3월 24일

였고, 관상감에는 황단 奉室 영건 길일이 오는 3월 25일 묘시이므로 相地官과 주시관 각 1명을 차출하여 당일 罷漏 후에 대기하도록 명령하였다.⁶¹⁾ 이날, 통진부사는 준비한 白土를 役所로 보낸다고 알려왔으며, 금위영에서는 석재 운반에 필요한 車子 1냥과 임대한 소 한 마리를 보낸다고 알려왔다.⁶²⁾

3월 25일에는 황단 위에 方石을 깔고 사이사이 모래를 뿌려 고정시켜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玉砂를 김포군수가 준비하여 보내왔다.⁶³⁾ 그러나 여전히 물종의 준비를 독려하고 재촉하는 일이 더 많았다. 한성부에 명령하여 황단 증수시에 西平君 집에 있는 石物과 충융청에 남아 있는 여분의 목재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니 근처 한성부민을 동원하여 납입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경기감영에는 神御榻 제조시 豆錫匠이 사용할 白土를 빨리 進納하라고 성화하였다.⁶⁴⁾ 뿐만 아니라 神御榻 증수시 조각과 그림을 그리는 일이 중요하므로 호조와 공조 등에 명하여 붓 세 자루와 먹 한 자루를 납입하라고 성화하고, 典設司에는 神御榻에 소용되는 破帳 2부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성화하였다. 또 神御榻 제조시 칠을 말리는데 소용되는 假家 3칸, 칠하는 假家 2칸 등을 新造하는데 油菴이 부족하므로 7부를 더 진배하라고 長興庫에 성화하고, 호조와 瓦罍에는 神御榻을 칠하는데 소용되는 松炭 가루 3승을, 공조에는 神御榻 조성시에 각 공장들이 물을 길어다가 쓸 수 있도록 중간 크기 瓮 1개를 진배하라고 독촉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서용 종이가 모두 떨어지자 사섬시와 호조 그리고 장흥고 등에 명하여 각각 백휴지 1근, 草記紙 5장을 진배하라고 성화하였다.⁶⁵⁾

3월 26일에는 4월 12일 행할 親祭 형식과 관련한 儀節을 논의하였다. 먼저 여러 執事들의 位次를 墻門 안에 두지 말고 皇朝의 전례를 따라 유문 밖으로 옮기도록 하였으며,⁶⁶⁾ 예조에서는 皇壇 親祭時 三獻 의식 절차를 품의하였다.

이날 독촉한 물종의 진배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한성부에 명하여 石物 부

61) 이상은 『大報壇增修所儀軌』 [甘結秩] 3월 24일

62) 위의 책, [來關秩] 3월 24일

63) 위의 책, [來關秩] 3월 25일

64) 위의 책, [移文秩] 3월 25일

65) 위의 책, [甘結秩] 3월 25일

66) 위의 책, [傳教秩] 3월 26일

족분을 私儲에서 취용하기로 하였으므로 貞洞 李注書의 집과 芹洞 李洗馬 집
에 있는 석재를 가져오기 위하여 한성부 서부의 坊民들을 동원하여 운반하도
록 하였다. 한편 호조, 평시서, 馬鐵前, 昌前 등에 명하여 神御榻 조성시에 豆
錫匠이 사용하는 毛老 2개, 牛皮로 만든 줄 3개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뜻
으로 진배를 성화하였다. 호조, 瓦署, 典設司 등에는 神御榻 제조시에 사용할
大土火爐 3개, 堂上과 郎廳들이 坐起할 때 사용할 土火爐 3개, 그리고 어탑을
칠할 때 필요한 기름 먹인 차일 등을 진배하도록 하였고, 호조와 장흥고에는
神御榻을 칠하는 데 필요한 假家 1칸의 차일을 만드는데 소용되는 油菴 2부를
사용하고 돌려준다는 뜻으로 진배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役軍 모집시 사
용할 大執鐸 1개를 호조와 공조에 명하여 납입하도록 했다.⁶⁷⁾

공사가 시작된 지 수 일이 지나자 물종의 移送 역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
다. 진흥청에서는 樂工廳 5칸의 신축에 소용될 목재를 이송한다는 관문을 보
내왔으며, 인천도호부사는 祭器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玉砂 2두를 보냈다. 그리
고 금위영에서는 車子 1냥을, 충융청에서는 車子 2輛과 소 4마리를 빌려서 보
낸다고 알려왔다.⁶⁸⁾

3월 27일에는 황단 역소에 사용되는 祭床, 탁자 등을 제조하는 조각장이 사
용할 廣佐兒를 만들기 위하여 厚油紙 3장을 진배하라고 호조와 장흥고에 성
화하였고, 황단 石物 운반시에 사용하는 束漚 20근의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는 뜻으로 선공감에 진배하도록 하였다. 이어 조각장이 사용할 갈돌 1개, 方文
3리, 刻刀 4자루 등을 군기시와 별공작 등에 성화하고, 한성부 車契에 황단 역
소에 동원된 소의 먹이 콩 20석을 운반하기 위한 車子 1냥을 진배하라고 성화
하였다. 이밖에 호조, 義盈庫, 내자시, 내섬시, 별공작 등에 명하여 황단 신어
탑 조성시 동원된 소목장 10명, 조각장 7명 등이 머물 처소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光明臺, 종지기, 등유 등을 진배하라고 성화하였다. 마지막으로 神御榻
조성시에 소목장이 사용하는 魚膠가 부족하자 호조와 군기시에 납입하도록
독려하였다.⁶⁹⁾ 이날 고양군수는 白土 1석을 보내왔다.⁷⁰⁾

67) 이상은 『大報壇增修所儀軌』 [甘結秩] 3월 26일

68) 위의 책, [來關秩] 3월 26일

69) 위의 책, [甘結秩] 3월 27일

70) 위의 책, [來關秩] 3월 27일

황단 증수의 모양이 점차 갖추어지자 3월 28일 영조는 皇壇直을 선발하여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논의하면서 漢人 자손 가운데 사람을 뽑아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⁷¹⁾ 황단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납입 물종은 점차 줄어들었다. 먼저 훈련도감 등에 명하여 황단 역소에 소용될 기와를 訓局에서 상비한 3늬를 가져다 쓰기로 하고 馬契를 동원하여 진배하라고 성화하였다. 그리고 훈국 소속의 造家匠 5명 역시 차출하였다. 한편, 호조와 沙器契에 는 神御榻 조성시에 銀匠 등이 사용할 사기 그릇 1개, 唐沙鉢 2개를 납입하도록 하였다.

황단에 사용할 제상과 탁자 그리고 御榻 등이 완성되면서 이들을 운반하기 위한 도구들이 필요하였다. 이에 호조와 선공감 등에 명하여 祭床과 卓子 등을 나올 때 묶기 위한 줄 10근의를, 호조와 재용감에 명하여 神榻 3좌, 神座 3좌 합하여 6좌를 포장하는 데 사용할 白苧布를 1좌당 6척씩 납입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문서에 사용되는 백휴지 2권, 白紙 1권 등을 호조와 사섬사에서 준비하도록 하고, 아교말 1승도 진배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禁漏에 명하여 神室 定礎時 주시관을 대령하도록 하였다.⁷²⁾ 이날 富平都護府使는 옥사 2두를 보낸다고 알려왔으며, 금위영에서는 車子 1냥을 임대하여 보내며 소도 보내도록 하겠다고 알려왔다.⁷³⁾

親祭하기로 한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3월 29일 황단 역소의 당상들은 비상 조치를 취하였다. 황단에 사용할 기름먹인 遮日을 밤낮으로 준비해도 시간 안에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지금 비가 내려 더 이상 바깥에서 재봉질을 하지 못하니 訓局 北營의 대청을 빌려 작업할 수 있도록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문을 올려 허락을 받은 것이다.⁷⁴⁾

납입하는 물종의 종류는 줄었지만 공사를 담당할 장인들은 여전히 부족했다. 이날은 선혜청에 목재(樓柱 20주, 宮材 5주)를 납입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과⁷⁵⁾ 葉紫金에 들어가는 수는 1전 5푼을 마련하도록 재용감과 호조에 성화하

71) 『大報壇增修所儀軌』 [傳教秩] 3월 28일

72) 이상은 위의 책, [甘結秩] 3월 28일

73) 위의 책, [來關秩] 3월 28일

74) 위의 책, [啓辭秩] 3월 29일

75) 위의 책, [移文秩] 3월 29일

였을 뿐이었다.⁷⁶⁾ 물종보다는 장인들이 더 시급하였다. 內需司에서는 소목장과 조각장 2명의 차정에 대해 조각장 1명을 보낼 뿐 더 이상의 차출이 어렵다고 보고하였고, 尙衣院 역시 황장방을 제작하는 조각장과 소목장 2명을 차송하라는 데 대해 상의원에는 원래 조각장이 없으며, 소목장은 3명 중 1명을 이미 神榻 조성에 보낸데다 나머지는 상의원의 일이 많아 차출이 어렵다고 알려왔다.⁷⁷⁾

4월 1일에는 황단 역소의 堂上과 郎廳들이 直所에서 사용하는 厚白紙 3장을 납입하도록 장흥고와 호조에 성화하고, 낭청들의 坐起시 화로에 사용하는 炭을 매일 3승씩 진배하도록 호조와 선공감에 명하였다.⁷⁸⁾

한편, 4월 2일에는 황단 역소의 신축 건물-樂工廳과 典祀廳-의 기와를 놓는 일이 중요하자 이들 독려하였다. 이미 기와 2눌을 취용한 바 있지만 여전히 모자라므로 訓局의 나머지 기와를 빨리 분송하라고 독촉하고⁷⁹⁾ 泥匠들이 사용할 生布 6척을 제용감에 명하여 납입토록 하였다. 특히 장인들이 급히 필요하므로 황단 奉室과 典祀廳 및 악공청 蓋瓦를 있는데 필요한 鞍子匠 3명을 공조에서 차출하도록 재촉하였다. 그리고 서리 8인이 문서 작성시 사용하는 黃筆 4자루, 眞墨 2자루를 공조에, 신어답 조성시 銀匠이 사용하는 五味子 3승을 호조와 제용감에서 납입하도록 성화하였다.⁸⁰⁾

이날 典設司에서는 황장방을 만들 칩선비 20명과 황단 위의 白布 遮日 50폭 60척짜리 1부를 만들 縫造軍 5명, 白木 재질의 內外 揮帳 14폭짜리 6부를 만들 봉조군 5명 등을 보내왔다. 그리고 황장방에 소용되는 기등을 만들기 위하여 貫子匠 4명, 油遮日에 기름을 먹이기 위하여 油杉匠 4명, 황장방 기등을 칠하는데 필요한 柒匠 4명 등 장인들 수명을 황단 역소에 定送하였다.⁸¹⁾

76) 『大報壇增修所儀軌』 [甘結秩] 3월 29일

77) 위의 책, [來關秩] 3월 29일

78) 위의 책, [甘結秩] 4월 1일

79) 위의 책, [移文秩] 4월 2일

80) 위의 책, [甘結秩] 4월 2일

81) 위의 책, [各司手本秩] 4월 2일

3) 親祭 거행을 위한 막바지 공사(4월 3일~4월 12일)

공사가 거의 완료되자 4월 3일 영조는 친히 황단에 임하여 望慰禮를 행하고 祭器와 犧牲 등을 살펴보겠노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11일 親祭가 가능한지 물었다.⁸²⁾ 한편, 이날 崇文堂에 나아가 호조·예조 당상을 인견한 후 친히 皇壇의 樂章을 고치기도 하고, 황단에 사용할 희생은 太廟의 예에 의거하여 소 한 마리를 各位에 쓰고 돼지와 양은 親行이나 攝行을 물론하고 神位마다 각각 한 마리씩 쓰도록 정하기도 했다.⁸³⁾

이제 황단 공사도 큰 것보다는 세세한 부분들이 주로 남았고, 납입하는 물품들 역시 이에 걸맞는 것들이었다. 가령 황단 역소의 遮日 제작에 필요한 明油를 끓이기 위하여 炭 1두를 선공감에 進排하도록 하고, 神御榻 內外袱을 꿰매는데 사용하는 가위[剪子] 2개, 인두[引導] 2개, 剪板 2개를 평시서, 자문감에 성화하였다. 그리고 황단 역소 주변에 깔아줄 細沙 20테를 다음날 새벽에 보내라고 호조와 馬契에 성화하고, 神御榻 조성시에 金匠이 사용할 無心筆 3자루, 黃蜜 2전, 雪綿子 3전, 수건용 綿紬 6척, 唐剪子 1개, 石紫黃 1냥 등을 호조, 공조, 義盈庫, 제용감 등에 성화하였다. 이외 神御榻에 끼는 요솨[褥槩]를 제작할 毛氈匠 1명을 공조로부터 차출하고, 황장방 제조가 급하자 訓練圖鑑에서 木鞋匠 이지건, 이지안을 보내도록 독촉하였다.⁸⁴⁾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영조는 직접 황단 奉室에 배설할 黃花地衣를 黃木縮으로 두르고 香室에 배설하는 白紋席 地衣 역시 黃木縮으로 두르도록 명하는 등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썼다. 뿐만 아니라 神座 神榻이나 龕室의 보자기도 안은 黃紬로 하고 바깥은 黃木으로 만들라고 하는 등 세세하게 지시하고 황단 제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독려했다. 심지어 황단 수직군은 몸이 깨끗한 사람으로 入直하도록 지시할 정도였다.⁸⁵⁾

壇門 공사도 본격화되었다. 선혜청에 명하여 皇壇의 사방 壇門을 改建하는데 들어가는 목재 大椽 10개를 급히 수송하도록 하였다.⁸⁶⁾ 이밖에 신어담 제

82) 『大報壇增修所儀軌』 [禮關秩] 4월 3일

83) 『영조실록』 권69, 영조25년 4월 3일

84) 『大報壇增修所儀軌』 [甘結秩] 4월 3일

85) 위의 책, [傳教秩] 4월 4일

조시 豆錫匠이 사용하는 炭이 부족하다고 선공감에 진배를 명하고, 皇壇 안의 三位 祭享에 들어가는 紫炭, 炬子 그리고 황장방 木物 조성에 필요한 갈돌 등을 해당 아문에 진배하도록 명하였다. 稷草 6동을 사섬시에, 方磚 제작을 위해 玉匠이 사용하는 方文里 10개를 공조에, 방전 마련시 소용되는 強礪石, 중역석 2괴를 군기사에서 납입하도록 했다.

한편, 황단 역소 匠人들과 募軍들에게 賞格으로 줄 木·米를 공조 등에서 준비하도록 성화하였으니⁸⁷⁾ 1명당 木棉 5척씩을 계상하여 목면 4동 31필 30척을 납입하도록 하였다.⁸⁸⁾ 이미 典設司에서는 황장방 봉조차 징발된 침선비 17명이 4월 2일부터 7일까지 功役을 모두 마쳤으며, 황장방을 포장[裹耳]할 때 동원된 皮匠 3명 역시 4월 6일부터 7일까지 畢役하였으므로 料布를 예에 의거하여 마련해주기시 바란다고 手本을 올린 바 있었기 때문이다.⁸⁹⁾

4월 5일에는 황장방 제조에 사용하는 丁紛, 荷葉, 阿膠, 三線 등 아교와 물감이 모자라므로 이를 공조와 호조 제용감 등에 진배하라고 성화하였다.⁹⁰⁾ 4월 6일에는 황단 역소에 사용하는 磚石 30립을 당장 조각해 진배하라고 호조와 西部 車契에 성화하고, 문서 작성에 쓰이는 종이 백지, 백휴지 등을 호조와 장흥고 등에 진배하도록 하였다. 이외 황단 奉室의 上櫪에 칠하는 灰30석을 호조, 선공감, 義盈庫 등에 진배하도록 하고, 황단 바닥을 메울 고운 모래를 퍼 바르는데 사용할 竹節 3부를 호조와 선공감에서 납입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神御榻 봉안시에 嫡長 忠義 10명이 烏紗帽와 黑團領을 입고 4월 10일 파루 후에 대기하라고 충훈부와 충의청에 명령해 두었다.⁹¹⁾

4월 8일에는 皇壇을 꾸미는 일이 매우 번다한데 이제 친제를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한성부에 명하여 황단 부근의 坊民들을 동원하여 주위를 청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啓目 작성에 필요한 초주지 3장을 장흥고에, 황단의 祭器를 그리기 위한 초주지 등을 풍저창에 성화하였다.

86) 『大報壇增修所儀軌』 [移文秩] 4월 4일

87) 위의 책, [甘結秩] 4월 4일

88) 위의 책, [移文秩] 4월 5일

89) 위의 책, [各司手本秩] 4월 4일

90) 위의 책, [甘結秩] 4월 5일

91) 위의 책, [甘結秩] 4월 6일

황장방에 필요한 平柱 8개, 高柱 4개 등을 칠하기 위해 唐朱紅 및 黃綿絲 中束漙 4長衣, 황면사 3甲所 4長衣 등을 호조와 제용감에 진배하도록 하고,⁹²⁾ 금위영과 어영청에는 황단 역소에 사용할 가마니를 각각 100장 씩을 납입하도록 했다. 병조에 명하여 장인들에게 분배할 布木을 준비하도록 하였으니 목면 3동 46필 10척, 米 60석 10두 5승이었다.⁹³⁾ 마지막으로 4월 9일에 皇壇 役所에서 일한 장인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기로 결정하고 술항아리 10개, 도동해 30개, 平盤 3개[竹], 사발 10竹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뜻으로 호조, 내자시, 예빈시 등에 마련토록 하였다.⁹⁴⁾

4월 9일에는 황단 役所에서는 증수 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계문하고 새로 제작한 제기들을 검수하였다. 제1위와 제3위에 사용할 제기를 공조에서 새로 만들었으므로 이들을 살펴본 것이다.⁹⁵⁾ 막바지 작업을 위하여 상의원에서 몇 명의 칠장을 더 충원하였으며⁹⁶⁾ 예문관 제학 鄭羽良이 보내온 악장과 제문들을 검토하였다.⁹⁷⁾

제기를 닦기 위한 法油를 의영고에서 납입하도록 성화하고, 奉室을 칠하는데 부족한 松烟, 家豬毛 등을 호조, 선공감, 평시서 등에 진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제 황단 역소의 기본적인 임무가 끝났으므로 당상과 낭청, 감조관 이하 員役과 공장들의 명단을 書啓하기로 하고 필요한 저주지 7장을 호조와 의영고에 진배하도록 하였다.⁹⁸⁾

4월 10일에는 황단 증수시 신축한 典祀廳, 樂工廳 등의 기와를 엮는 일이 매우 시급하므로 訓局의 기와 5訃[기와1천장이 1닐]을 빌려다가 공사하겠다는 보고와 함께 이제 황단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전사청, 악공청 등의 기와 공

92) 『大報壇增修所儀軌』 [甘結秩] 4월 8일

93) 위의 책, [移文秩] 4월 8일, [各司手本秩] 4월 8일자를 보면, 長興庫에서 올린 手本에 황단에 깔 地衣와 자리 등을 새로 만드는데 동원할 茵匠 김두백 등 5명의 5일치(4월 4일부터 8일까지) 임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94) 위의 책, [甘結秩] 4월 8일

95) 위의 책, [啓辭秩] 4월 9일

96) 위의 책, [來關秩] 4월 9일: 柒匠 10명을 더 충원하라고 하자 이미 和平翁主 방에서 5명을 차출하였으므로 祭床과 卓子を 만드는데 3명을 더 보낼 수 있지만, 현관 제작에 필요한 2명은 보낼 수 없다고 알려왔다.

97) 위의 책, [禮關秩] 4월 9일

98) 위의 책, [甘結秩] 4월 9일

사가 완료되는 대로 역에 동원된 사람들을 포상한 후 放送하겠다고 啓聞하였다.⁹⁹⁾ 그리고 여러 가지 황단 儀節과 관련한 항목들을 마련하였는데 가령 三皇 神位의 紙榜을 쓰는 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서서관을 두고 齋宿한 후 친제 전날 初更 三點[7시 45분]이 되면 쓰도록 하고 이를 후일의 정식으로 삼았다.¹⁰⁰⁾ 이밖에 황단의 제기와 여러 가지 물종은 매년 孟春에 예조당상과 호조당상이 이를 살펴보기로 정하였다.

이날 영조는 황단에 나아가 공사가 완료된 상황을 보고 ‘皇朝의 陵廟에 血食[國典으로 제사를 지내는 일]을 못한 것이 1백년이 지났는데, 이제 장차 세 황제를 한 제단에 함께 제향을 올리게 되었으니 列聖祖의 事大하는 정성을 펼 수 있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太學의 여러 유생들이 배종하여 제사지내기를 청하자, 拱北門 밖에서 제사에 참여하도록 하라 하였다.¹⁰¹⁾

親祭 하루 전인 4월 11일 영조는 황단 제향시에 사용하는 卓衣 등은 조선의 明紬로 하고 이를 정식으로 삼도록 전교한 후¹⁰²⁾ 황단에 나아가 望慰禮를 행하였다. 드디어 4월 12일이 되자 영조는 황단에 나아가 친히 三皇을 제사할 수 있었다. 제사가 끝난 후 영조는 황단 증수에 참여한 많은 관리들과 장인들과 그리고 募軍들에게 비망기를 내려 상을 주었다.

증수 감동관인 당상 판서 조관빈, 이주진, 박문수 등에게는 加資하고, 낭청 정랑 이경조, 이석록 등은 당상으로 승진시켰으며, 이미 당상직인 사람은 속마 1필을 지급하였다.¹⁰³⁾ 한편 元景夏는 강화 유수가 되었다.¹⁰⁴⁾ 神棚 着柒 감동관 황호원, 제기감조 정랑 유상진, 이정황 등에게는 직급을 올려 敍用하고 좌랑 임용에게는 兒馬 1필, 박호원에게는 上弦弓 1장을 사급하였다. 監役官과 주시관에게는 각각 상현궁 1장을 사급하도록 하였다. 神御榻을 造成한 전 첨사 변이진은 막중한 국역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加資하고, 한량 현덕룡, 壇上 감역 이덕관 등은 邊將으로 제수하였다. 그리고 築壇時 영역부장을

99) 『大報壇增修所儀軌』 [啓辭秩] 4월 10일

100) 위의 책, [傳教秩] 4월 10일

101) 『영조실록』 권69, 영조25년 4월 10일

102) 『大報壇增修所儀軌』 [傳教秩] 4월 11일

103) 위의 책, [비망기]

104) 『영조실록』 권69, 영조25년 4월 12일

담당한 전만중, 박도원, 김창일, 옥두성 등은 근면하므로 邊將으로 제수하도록 하고, 강복규는 이미 변장이므로 兒馬 1필을 주었다. 算員 최환추 등은 근로하므로 특별히 동반직에 제수하였으며 나머지 工匠들 이하 員役人들은 차등있게 米布를 주었다.¹⁰⁵⁾

4월 12일 현재, 대보단 증수 공사는 공식적으로는 완료되었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단 증수 공사시 목재나 석재 등 큰 재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황단 남쪽의 담장을 잠시 허물었으므로 이를 복구하는 한편¹⁰⁶⁾ 壇門을 신축하거나 황단 주변의 보수 및 제조 작업 등을 마무리해야 했다.

大報壇 守直內官으로 하여금 황단 북변 水門의 鐵箭을 보수하도록 하고, 壇上의 제조용으로 낫 5자루, 호미 10자루 삽 2자루 괭이 1자루 등을 제조하여 납입하고, 祭井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木貫子[나무 두레박] 하나, 齋室 바람막이용 中竹 10개, 三甲所 6간의 등이 파손되어 이를 준비하도록 하고, 內官房 온돌의 벽칠 등도 완료해야 했다.¹⁰⁷⁾ 이밖에 황단 中門의 이름도 冽泉, 思成, 如見 가운데서 ‘열천’으로 정하고 글씨는 의궤 당상 가운데 글씨를 잘 쓰는 공조판서 趙觀彬으로 하여금 쓰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माम을 진행하였다.¹⁰⁸⁾

4) 의궤 제작

친제 前日인 4월 11일 大報壇 役所에서는 算員들이 사용하는 문서지로 백 휴지 1권을 사شم시, 호조에 진배하도록 하고, 공사 완료와 함께 의궤를 제작하여야 하니 이를 위해 공조서리 김상욱, 호조서리 김세태, 예조서리 이홍문, 선혜청 사령 김수홍, 호조사령 남대철 등을 정하기로 하였다.¹⁰⁹⁾ 그리고 4월 12일 대보단 親祭가 끝나자 곧이어 의궤를 제작하기 위한 節目을 준비하였다.¹¹⁰⁾

105) 『大報壇增修所儀軌』 [비망기] 4월 12일

106) 위의 책, [啓辭秩] 4월 12일

107) 위의 책, [來關秩] 4월 16일

108) 위의 책, [傳教秩] 4월 24일

109) 위의 책, [甘結秩] 4월 11일

110) 위의 책, [儀軌] 4월 13일

의궤청이 설치되고 儀軌事目이 마련되었다. 의궤청을 해민서에 배설할 것을 필두로, 제작된 의궤는 각각 춘추관, 강화사고, 의정부 예조에 각각 1건씩 分上할 것이며, 의궤 낭청으로 호조정랑 李景祚로 差下하는 일, 대만한 관리는 粉牌[당하관의 패. 분을 발라 만든 나뭇조각]로 治罪할 것 등에 대한 일반적인 항목들이었다.

의궤청이 마련되자, 낭청들은 호조와 병조 그리고 장흥고 등에 공문을 보내어 分上用 儀軌 제작에 필요한 백휴지 1근, 黃筆 3자루, 眞墨 2丁, 그리고 의궤청 郎廳 등이 坐起할 때 방에 불을 지펴야 하므로 이때 점화할 불쏘시개 매일 반 단, 화로에 사용할 炭 매일 1승, 서리들이 머물 上直房 점화용 불쏘시개, 燈油, 백사발, 陶東海, 갈돌 등을 진배하도록 하였다. 이외 서리들이 문서 용지로 사용할 白休紙 2권, 공사백지 10장, 啓目を 적어 올리는 데 쓰는 초주지 3장 등을 준비하도록 하고 捕盜軍士 2명도 定送하도록 했다.¹¹¹⁾

4월 14일에는 의궤를 제작하는 동안 여러 가지 衙門들과 주고 받은 문서를 담아 둘 상자와 자물쇠, 그리고 쌀 등을 담아 놓을 米布庫와 자물쇠 하나씩을 선공감과 호조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¹¹²⁾

4월 15일에는 본격적인 의궤 제작에 앞서 能書書吏를 확보하고 이들의 급료와 점심 등을 준비하였다. 먼저 능서서리 4인은 이들의 料布를 제공하는 衙門에서 差送하도록 하였는데, 각각 호조서리 정도희, 공조서리 1인 그리고 병조서리 고시성, 사복시 서리 1인 등이었다.¹¹³⁾ 그리고 호조와 병조에 이문을 보내어 황단 의궤청의 書吏 3인, 庫直 1인, 使令 2명의 料布와 能書 書吏 4인의 점심 식사를 위한 쌀을 4월 13일을 기점으로 하여 우선 한 달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¹¹⁴⁾ 본격적인 의궤 제작에 앞서 미리 사람과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이후 4월 한달 동안은 의궤 出草시에 필요한 종이를 납입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4월 17일에는 백휴지 1근을 호조와 사섬시에 요청하였고¹¹⁵⁾ 26일

111) 『大報壇增修所儀軌』 [儀軌廳 甘結秩] 4월 13일

112) 위의 책, [儀軌廳 甘結秩] 4월 14일

113) 위의 책, [儀軌廳 甘結秩] 4월 15일

114) 위의 책, [儀軌廳 移文秩] 4월 15일

115) 위의 책, [儀軌廳 甘結秩] 4월 17일

에도 백휴지가 부족하다며 2권을 호조와 사첨시에 성화하였다.¹¹⁶⁾

5월이 되자 의궤 초고본 원고를 正書하고 製冊할 차례가 되었다. 의궤청에 서는 호조, 공조, 선공감, 교서관, 의영고, 평시서 등에 공문을 보내 分上用 의궤 4벌을 정서하기 위하여 한 벌당 저주지 8권씩 모두 32권, 그리고 먹과 黃蜜 등을 진배하도록 요청하고 책을 만들기 위하여 印札匠과 冊匠 각 1명 및 印札板을 배송해 달라고 주문하였다.¹¹⁷⁾

한편, 5월 7일에는 의궤청 서리들의 문서 작성용으로 사용하는 백휴지와 의궤 정서에 소용되는 좋은 품질의 黃筆 8자루, 眞墨 4자루 등을 호조, 공조, 사첨시 등에 납입하도록 성화하였다.¹¹⁸⁾ 그리고 5월말이 되자 다시 의궤청 서리 3인, 고직 1명, 사령 2명의 料布와 能書書吏 4인의 점심을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치를 마련하여 보내도록 하였다.¹¹⁹⁾

6월에도 의궤 제작은 완료되지 않았다. 6월 1일에 의궤청에서는 호조, 공조, 사복시, 전의감, 서빙고 등에 요청하기를, 의궤를 정서하는 서리 4명이 사용하는 筆墨을 1인당 황필 2자루씩 모두 8자루, 진묵 1자루씩 4자루를 납입해 주도록 요구하고 피서용 馬通[말뚝치] 5석, 香蒿 1냥, 부순 얼음 한 덩어리를 매일 진배하도록 전의감과 서빙고에 부탁하였다.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이들을 달여 먹어야 하므로 술[食鼎] 한 개와 땀나무 반 단(3일에) 역시 進排해 달라고 요청하였다.¹²⁰⁾ 6월 28일에는 다시 한달치 食料를 호조와 병조에 요청하였다.¹²¹⁾

한편, 9월이 되자 완성된 의궤를 정서하기 위한 종이를 준비하고 이를 搗砧하기 위해 造紙署에 도침군과 架子軍 도합 8명을 보내고, 도침작업에 필요한 틀[架子] 2대와 油菴 2부, 이를 묶는 끈 4良衣, 帳幕 1부, 紅木 보자기 2건 등을 호조, 병조, 선공감, 장흥고, 전설사 등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다.¹²²⁾ 이후 의궤가 완성되자 이를 분상하기 위한 절차만이 남았다. 분상용 의궤를 포장하

116) 『大報壇增修所儀軌』 [儀軌廳 甘結秩] 4월 26일

117) 위의 책, [儀軌廳 甘結秩] 5월 4일

118) 위의 책, [儀軌廳 甘結秩] 5월 7일

119) 위의 책, [儀軌廳 移文秩] 5월 24일

120) 위의 책, [儀軌廳 甘結秩] 6월 1일

121) 위의 책, [儀軌廳 移文秩] 6월 28일

122) 『大報壇增修所儀軌』 [儀軌廳 甘結秩] 9월 일

기 위한 紅細廣布 2척 2촌과 백휴지 3냥, 저주지 1장, 阿膠末 2홉, 邊鐵 2개, 고리 1개 등을 진배하도록 호조, 선공감, 장흥고, 예빈시 등에 공문을 보냈다.¹²³⁾ 그리고 드디어 완성된 의궤 가운데 황색으로 표지를 꾸민 것은 의정부, 춘추관, 예조에 한 부씩 분상하고 나머지 한 부는 강화사고에 分送하는 것으로 의궤 제작의 전 과정이 끝나게 되었다.¹²⁴⁾ 한편, 황단 役所 의궤 이외에 別工作儀軌도 따로 제작하였다. 역시 監役官 등 관리들의 명단과 별공작의 주요 임무였던 工作所 假家 제작에 소용된 물종 및 장인들의 명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맺음말

조선 후기 大報壇은 그야말로 조선중화 의식의 상징이었다. 임란 당시 구원 병을 동원하여 조선을 도운 명 신종의 配享을 목적으로 숙종대인 1704년 처음 창건된 이후 영조대인 1739년 봄 대보단의 神室이 신축되었고, 2년 후인 1741년 대보단 祭禮에 사용될 악기가 새로 조성되었다. 한편, 1745년(영조21) 봄에는 대보단의 齋殿이 지어지는 등 영조대에 이르러 대보단의 增修 과정은 계속 이어졌다. 드디어 1749년(영조25) 영조는 대보단의 증수를 본격화하고 명나라 신종만이 아닌 마지막 황제 의종 그리고 태조 高皇을 포함한 명 三皇의 제단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壇壝를 넓히고 높여 9계단으로 하고 神座와 神榻 역시 모두 황조의 격식에 맞추어 새로 제작하고 이전의 것들은 보수하였다.

영조대 대보단의 확대와 의종 및 태조의 배향에 대한 신하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들 三皇의 제례를 조선 왕실에 지냄으로써 中華의 적자로서의 조선왕실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영조의 의지를 꺾기는 어려웠다.

영조가 노린 것은 대명의리의 명실상부한 主人으로 그 입지를 확고히 함이었다. 그동안 효종의 복수설치와 만동묘, 그리고 숙종대 대보단으로 이어지는 대명의리론은 실상 노론의 정국 주도용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영조는 이제

123) 『大報壇增修所儀軌』 [儀軌廳 甘結秩] 9월 일

124) 위의 책, [儀軌廳 移文秩] 9월 일

대보단의 증수 과정을 통해 효종에서 숙종으로 이어지는 대명의리의 주체를 君主로 설정하고 송시열 이래 의리론을 주도하던 노론계로부터 그 주도권을 탈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영조대 이후 대보단(황단)은 고종 치세에 이르기까지 중국황실의 제례를 設行하였으나 1908년 宮內府로 소관 업무가 이관된 후 일제 시대 곧바로 해체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¹²⁵⁾ 일제 이후 대보단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의 상징물로 인식되어 부정적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명나라 멸망 이후, 中華 문화의 嫡子를 자부하던 조선 지식인들의 문화적 자존심과 명나라에 대한 의리론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대보단은 그 상징과 활용의 주도권을 두고 정치 세력의 각축이 벌어졌던 핵심적 사안이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필자 : 서울대학교 규장각 책임연구원)

125) 풍영섭, 1989 『大明遺民史』 (保景文化社) 참조

<Abstract>

King Yeongjo's Plans to Renovate the Daebo-dan Altar in 1749 and the Enshrinement of Three Ming Dynasty Emperors

KIM HO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period, the Daebo-dan(大報壇) Altar was the symbol of the Chosun public's sense of Superiority (not replacing but) succeeding the rightful Chinese dynasties(朝鮮中華主義). The Daebo-dan altar was first constructed in 1704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in order to enshrine and honor the Ming emperor Shinjong(神宗) who dispatched troops to help the Chosun dynasty which was embroiled in a conflict with the Japanese who invaded Chosun in 1592. Then the altar was renovated during King Yeongjo's reign, and in 1749, the altar was enlarged to make room for additional enshrinements of other Ming emperors such as the dynasty founder Taejo(太祖) and the last emperor Euijong(毅宗). The royal seats and chairs(神座·神榻) were also newly designed with a feature abiding by appropriate royal codes for the Emperors and the Empire.

The enlargement of the altar and the enshrinements of Ming emperors were met by rather severe criticism launched by the vassals. But King Yeongjo himself was intent on solidifying his role as the legitimate successor of Chinese Superiority through arranging memorial services for the three Ming emperors. He wanted to become an embodiment of a loyal citizen,

abiding by moral obligations toward the great Ming dynasty. The concept of loyalty toward the grand Ming was realized through several governmental policies, such as King Hyojong's declaration of vengeance and the creation of the Mandong-myo(萬東廟) shrine, or the construction of the Daebo-dan altar during King Sukjong's reign. The concept also served as the backbone of a primary ideology shared by the Noron(老論) faction members in their securing a superior position inside the political arena.

Yet then, through renovating the Daebo-dan altar, King Yeongjo was trying to seize an opportunity to newly define the leading authority of the King as the leader of such loyal mentality which was firmly maintained during the reigns of Kings Hyojong and Sukjong. He was trying to turn the tides among political parties, taking an offensive position for the first time against the Noron faction members, who had seized the government and led the said mentality long since the era of Song Shi Yeol.

Key Words : Daebo-dan altar, Moral obligations regarding the Great Ming dynasty, King Yeongjo, King Sukjong, Song-Shi-Yeol, the Noron faction